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(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395

발의년월일: 2020년 4월 1일

발 의 자 : 홍성룡, 김화숙, 한기영, 강동길,

김기대, 김정태, 김제리, 김춘례, 박순규, 양민규, 유 용, 이광호,

이동현, 장상기, 황인구 의원

(15명)

1. 제안이유

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, 그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 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

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"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·군무원·노무자·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·신체·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.
- 2. "피해자"란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, 국외강제동원 희생자,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 금피해자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대일항쟁기에 서울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
- 2.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·학술 사업 및 조사·연구 사업
- 3.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공간의 조성사업
- 4.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(지원사업)에 따라 비용 발생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≒ 1,747,855천원
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,747,855천원으로 연평균 349,571천원임
 - 추계의 전제
 - 지원사업(제4조)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료를 준 용하여 추계
 -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(제4조 제1호)은 추모 조형물 설치로 전제 하여 추계
 -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1,747,855천원
- 총비용 = 추모사업비 + 관련 문화·학술 및 조사·연구사업비 + 추모공간 조성 사업비
 - = 149.500천원 + 390.000천원 + 1.208.355천원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 계
세입	_	_	-	_	_	_	_
	소계(a)	-	-	1	-	_	1
세출	추모사업비 (제4조 제1호)	29,900	29,900	29,900	29,900	29,900	149,500
	문화·학술 사업 및 조사·연구 사업비 (제4조 제2호)	78,000	78,000	78,000	78,000	78,000	390,000
	추모공간의 조성사업비 (제4조 제3호)	241,671	241,671	241,671	241,671	241,671	1,208,355
	소계(b)	349,571	349,571	349,571	349,571	349,571	1,747,855
총비용(b-a)		349,571	349,571	349,571	349,571	349,571	1,747,855

- 1) 추모사업비용 = $\sum_{i=1}^{5} (연간추모사업비용)i$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- 연간 추모사업비용 ≒ 29,900천원
- ·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은 추모 조형물 설치로 전제하여 추계
- ·조형물 설치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'역사관 어린이체험단 조형물 설치공사'사업비 준용(2018)
- 2) 문화·학술 및 조사·연구사업비 = $\sum_{i=1}^{5} (e^{2} + e^{2} +$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- 연간 문화·학술 및 조사·연구사업비용
 - ≒ 78,000천원
 - 문화·학술비(60,000천원) + 조사·연구비(18,000천원)
- ·문화·학술 및 조사·연구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'문화학술사업' 및 '조사연구사업'사업비 준용(2019)
- 3) 추모공간의 조성사업비용 = $\sum_{i=1}^{5}$ (연간추모공간조성사업비용)i
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- 연간 추모공간 조성사업비용 = 241,671천원

·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'강제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'사업비 준용(2018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2 02-2180-7954

e-mail: thdud36@seoul.go.kr